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예산군

내 용

충청남도 예산군에서는 2014. 4. 2. ○○읍 ○○리 ○○○○사업 0블럭 공공청사용지에 연면적 19,698㎡ 규모(대지35,397㎡)의 신청사 건립(410억원)을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하였다.

1. 설계공모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설계공모 운영요령) 제3절(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

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 평가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 평가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됨에도 예비명단에 예산군 ○○○ 과장을 예비명단에 선정하였으며, 2014. 6. 24.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응모작품 당선작 및 우수작 심사에 위법·부당하게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인 ○○○과장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다.

2. 창호공사 관련 부적정하게 설계한 업체 미 제제

위 관서에서는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를 2015. 3. 17. (주)○○○○○○○ 건축사사무소와 1,972백만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

을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상수도, 하수도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015-473호)」을 준수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 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기술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은 총용역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등에게 별점을 측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창호공사 물량산출, 설계도면, 단위중량, 할증율 등 설계서 전반에 걸쳐 사업 착수전이나 시공 전에 성실하게 검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등에게 별점을 측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감리 등에게 창호공사 물량산출, 설계도면, 단위중량, 할증율 등 설계서 전반에 걸쳐 사업 착수전이나 시공 전에 성실하게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6. 10. 3.부터 충청신문에 언론보도 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자 위법·부당하게 2017. 5. 19. ○○○○ ○○연구원(계약금액: 10백만원)에 창호공사 설계내역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98.125톤을 93.036톤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창호공사 물량산출, 설계도면, 단위중량, 할증율 등 설계서 전반에 걸쳐 사업 착수전이나 시공 전에 성실하게 검토를 태만히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감리 등에게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을 측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해당업무를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예산군수는

[시정] 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설계공모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